



강소통업실업유한공사 VS 왕쯔청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12

01 서지 사항

| | | | |
|------------------|---|-------|------------------|
| 국가 법원 |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 사건번호 | (2004)苏民三终字第132号 |
| 판결 일자 | 2005년 2월 22일 | 판결 결과 | 상소일부인용(권리자 일부 승) |
| 원심원고(상소인) | 강소통업실업유한공사 | | |
| 원심피고(상소인 및 피상소인) | 1. 왕쯔청, 2. 남통 시허섬유유한공사 청산조, 3. 남통시허섬유유한공사, 4. 주어화이리, 5. 차오신이, 6. 남통리상의류유한공사 (1, 2만 상소함, 6은 중외합작기업) | | |
| 참조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 | |
| 영업비밀 | 7곳의 일본 고객 명단 | | |
| 키워드 (Keyword) | 고객명단(客户名单), 실질적유사와 접촉(实质性相似加接触), 주관적 고의(主观的故意), 대리행위(代理行为), 제3자에 의한 상업비밀침해행위(第三者的侵犯商业秘密行为) | | |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강소통업실업유한공사(이하 '통업공사')는 일본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섬유제품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원심 피고 왕쯔청, 주어화이리, 차오신이는 모두 원심 원고 통업공사에서 일하던 직원이다. 이들은 통업공사에서 일하면서, 7곳의 일본고객과 직접적인 섬유 대외 판매업무를 맡았다.

왕쯔청은 통업공사를 사직하고, 2001년 5월 원심 피고 남통시허섬유유한공사(이하 '시허공사')를 설립하여 법정대표인이 되었다. 그러나, 시허공사는 수출입 업무 경영권이 없어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중외합작기업 원심피고 남통리상의류유한공사 (이하 '리상공사')와 함께 수출입 업무를 하였고, 2001년 12월 경 합계 1,262,716달러가량의 업무량이 발생하였다. 주어화이리, 차오신이도 통업공사 퇴직 후 시허공사로 이직하여 함께 업무를 맡았다.

통업공사는 왕쯔청 원심 피고들의 행위를 발견한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보전과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하였다. 한편, 시허공사는 연간 회계 검사를 받지 않아서, 강소성 난통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하여 영업집조를 취소당하였고, 법에 따라 조직을 청산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왕쯔청과 시허공사에 대해서는 상업비밀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주어화이리, 차오신이, 리상공사에 대해서는 상업비밀 침해 책임을 부인하였다. 원심 원고 통업공사, 법적책임이 인정된 원심 피고 왕쯔청, 시허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 원심 원고(상소인) | ⇒ | ⇐ | 원심 피고(상소인 및 피상소인) |
|-------------------------|---|---|---------------------------|
| 7곳 일본 고객명단은 상업비밀이다. | | | 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 왕쯔청과 시허공사가 침해행위를 하였다. | | | 왕쯔청과 시허공사는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
| 주어화이리, 차오신이가 침해행위를 하였다. | | | 주어화이리 차오신이는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
| 리상공사가 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 | | | 리상공사는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
| 1심의 손해배상액은 과소하다. | | | 1심의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다. |

04 판결 요지

통업공사는 7곳 일본 고객 명단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으며, 적당한 비밀보안 대책을 세웠다. 또한, 해당 고객명단은 단순한 고객명단의 나열이 아니고, 고객과 장기적인 거래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정보, 연락처, 경영패턴, 수요 유형 등 이 나타나 있으며, 이런 고객과 통업공사의 거래관계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며 이미 독특한 거래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고객명단은 상업비밀이다.

사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왕쯔청이 통업공사의 상업비밀을 리상공사에 유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의 행위는 통업공사의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시허공사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 거래에 참여하였으므로, 시허공사 행위 역시 통업공사에 대한 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왕쯔청과 시허공사의 상품무역이 일본 공사의 대리행위라는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주어화이리와 차오신이는 통업공사에서 근무하였던 일반직원이며, 근무 기간도 각각 7개월과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주어화이리와 차오신이가 상업비밀인 고객명단에 접촉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상업비밀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리상공사는 객관적으로 왕쯔청이 유출한 통업공사의 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원고 통업공사는 리상공사가 주관적으로 ‘명확히 아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리상공사는 왕쯔청이 일본 업체의 대리라고 생각하였고, 왕쯔청의 실제 신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따라서, 리상공사의 행위가 상업비밀을 침해할 수 는 없다. 하지만, 리상공사는 통업공사가 주장한 권리와 증거 제시 이후 해당 상업비밀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고객명단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결국, 상소심에서는 리상공사에 장래를 향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통업공사의 상소를 일부 인용하였다.

05 Key Point

본 사건에서, 리상공사는 왕쯔청과 시허공사의 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행위 분담을 하였으나, 리상공사는 왕쯔청과 시허공사의 상업비밀 침해 정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주관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결은 “实质性相似加接触” 규칙을 해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만약 침해자가 사용한 상업비밀과 권리소유자의 상업비밀이 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 동시에 침해자가 이전에 해당 상업비밀을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를 권리소유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 침해자는 자신이 사용한 상업비밀의 합법적인 출처에 대해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권리침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의 정보 접촉주체는 주로 직접적으로 권리소유자 측에서 상업비밀을 얻을 수 있는 제2자를 가리키며, 그 외에 제2자 측에서 전달받아 접촉하였거나 혹은 상업비밀을 재접촉한 제3자가 특정한 환경에서 주체와 접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제2자는 해당 상업비밀이 어떤 권리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제3자와 권리소유자의 접촉은 간접적인 접촉이므로 제3자의 상태를 예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2관에 의하여 권리자는 제3자에 대해서 상업비밀침해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